

전주지방법원 2017. 8. 18 선고 2015가단25305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

변론 종결 2017. 7. 14

판결 선고 2017. 8. 1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전북 완주군 D 대 42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n 부분 감나무, 1- 부분 은행나무, ㄱ 부분 감나무, e 부분 모과나무를 각 수거하고, u 부분 정화조시설을 철거하고,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나. 전북 완주군 E 대 4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벽돌조 스라브 화장실 12㎡, 부분 수도시설을 철거하고,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전북 완주군 D 대 424㎡, E 대 4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. 3. 27. 접수 제363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소유자이다.

나. 망 B는 전북 완주군 F 지상 건물(이하 '피고측 건물'이라고 한다)의 소유자인데, 별지 도면과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피고측 건물 일부와 시설물,수목이 이 사건 토지위에존재한다.

다. 망 B는 2016. 9. 9. 사망하였고,배우자 피고, 자녀 G, H, I은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.

피고는 피고측 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. 12. 8. 접수 제134979호로 상속등기를 마쳤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측 건물 일부와 시설물, 수목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, 위 건물과 시설물,수목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김선용

별지